

수출입식품상표¹⁾ 標簽 : label심사규정 (進出口食品標簽審核操作規程)

1.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모든 포장된 수출입식품, 중국 국내에서 개별포장(分裝)되는 식품, 면세 및 국제선 기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심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에 따르면 수출입자는 각 지방검사검역기구(ciq) 또는 질검총국에 소정의 서류와 샘플을 제출하여 (수수료는 건당 300rmb)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적합한 경우 《수출입식품 상표심사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처리기한 근무일 기준 13일). 수출입 신고시 동 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3. 동 제도 관련 당관에 민원인들로부터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자료 전문 국문번역하여 게재하니, 관련업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 및 수리

- (1) 담당기구: 각 검사검역기구 또는 국가 질검총국²⁾
- (2) 담당기구는 다음에 열거한 신청자료를 심사한다.
 1. 《수출입식품상표심사신청서》³⁾
 2.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사업자 등록증⁴⁾
 3. 식품 상표의 도안 샘플 7부, 식품 상표의 도안 샘플은 반드시 수출입 및 유통 시에 실

제 사용되는 최종 도안이어야 한다.

4. 상표의 내용 중에 특별히 강조하는 어떠한 내용이 있거나(예를 들어 제품의 성분구성이 "100% 천연재료"·"고칼슘"·"저당(低糖)" 등인 경우) 또는 생산연도·주류의 숙성도·각종 수상경력(예를 들어 제품의 전통·법정 생산지·특별 소장판·모 단체의 지정 제품) 등의 특정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標簽: label

2) 國家質檢總局

3) 進出口食品標簽審核申請書

4) 營業執照

5. 수입식품의 경우 다음을 추가 심사한다: 제품이 생산국(지역) 관할 정부의 판매허가를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원산지 증명.
수출식품의 경우 다음을 추가 심사한다: 수출기업위생허가증
6. 모든 신청 자료는 신청업체의 공식 입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그 내용을 중문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모든 신청 자료(식품상표 샘플을 제외)는 각각 2부씩 제출하며 담당기구와 질검총국에서 각각 1부씩 가진다. 식품 상표의 도안 샘플은 모두 7부 제출하며 담당기구가 1부, 질검총국이 나머지 6부를 가진다.

상표에 기재 또는 표시된 문자·그림·부호 등은 선명하게 인쇄되어야 하며 상표 샘플은 반드시 평면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한 상표의 도안 샘플이 증서의 제작에 사용되기 위하여 A4용지 크기보다 크거나 상표에 사용된 재료가 증서의 제작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사용하는 포장을 평면화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촬영이나 스캐닝 등의 형식을 빌려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상표에 축소 확대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상표의 도안 샘플은 A4용지보다 클 수 없다.

수입식품의 상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래 상표의 번역본을 2부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기구와 국가 질검총국이 각각 1부씩 가진다.

수입식품의 원래 상표 위에 중문으로 된 상표를 부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문 상표는 반드시 주로 전시되는 면의 고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한 후 완벽한 상표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식품을 수입할 때는 그 부착 위치 및 내용이 심사에 합격한 상표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부착된 중문 상표로 인하여 가려진 원래 상표의 외국어 내용을 따로 번역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3) 고 지

신청 자료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 또는 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수출입식품의 상표 심사 신청을 위한 보충 수정자료 고지서》⁵⁾(별첨 1 참고)를 발부하고 신청인에게 보충 수정하여야 하는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1회 고지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본다.

(4) 수 리

담당기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완벽하게 구비되었는지 또한 상표의 형식이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수리 또는 수리불가의 결정을 내린다.

1. 수리의 결정

- ① 담당기구는 신청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신청서 일련번호는 12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며 처음 4자리는 수리 담당기관을 나타내는 코드이며 다음 4자리는 연도 및 월을 나타내고 마지막 4자리는 일련번호이다. 일련번호는 매년 새로 편제한다.
- ② 담당기구는 신청인에게 담당기구의 전용 직인이 날인되고 일자가 기재된 《수출입식

5) 進出口食品標簽審核中申請材料補正告知單

품의 상표 수리 결정서》⁶⁾ (별첨 2 참고)와 《식품상표 심사 및 검사샘플 송부통지서》⁷⁾ (별첨 3 참고)를 발부하고 심사기록을 작성한다.

- ③ 신청인은 《수출입식품의 상표 수리 결정서》에 지정된 계좌번호로 식품 상표 심사비용을 납부한다. 신청인은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은행 지로용지 사본 2부를 준비하여 그 중 1부에 영수증 발부를 위한 연락처·우편번호·담당자 및 담당전화번호를 기입하여 담당기구에 제출한다. 영수증은 총국 표준법규센터⁸⁾에서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을 통해 전달한다. 다른 1부의 사본은 행정 허가 결정을 수령할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사용한다.
- ④ 신청인은 《식품상표 심사 및 검사샘플 송부통지서》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 ⑤ 신청인은 《수출입식품의 상표 수리 결정서》와 상표 심사비용의 납부를 증명하는 은행 지로용지 사본을 소지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수령한다.

2. 수리불가의 결정

담당기구는 수리하지 않기로 한 신청에 대하여 담당기구의 전용 직인이 날인되고 일자가 기재된 《수출입식품의 상표 수리불가 결정서》⁹⁾ (별첨 4 참고)

(5) 상부 보고

1. 상부 보고자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제본한다.
 - ① 식품 상표 심사비용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은행 지로용지 사본
 - ② 심사기록
 - ③ 신청서
 - ④ 상표 도안 샘플
 - ⑤ 기타 자료
2. 신청 자료의 전산화: 담당기구는 국가가 정한 전산화 관리 절차에 따라 전산화 자료를 제작한다.
3. 7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청 자료와 전산자료를 택배로 국가 질검총국에 송부한다.

II. 심사

질검총국은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 자료와 심사 의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하고 13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허가승인 또는 허가승인불가의 결정을 내린다. 허가하는 경우 《수출입식품의 상표심사증서》¹⁰⁾ 를 제작한다. 허가하지 않는 경우 《수출입식품의 상표 심사 불합격 통지서》¹¹⁾ 를 작성한다. (샘플에 대한 검사 21일(업무일 기준)은 이 같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질검총국은 신청인에게 신청 자료를 중복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6) 進出口食品標簽審核不合格通知單

7) 進出口食品標簽單證領取收據

8) 農行北京東城支行祁家豁子分理處

9)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標準法規研究中心

10) 辦理進出口食品標簽審核須知

11) 進出口食品標簽審核不合格通知單

III. 증서 또는 불합격 통지서의 발급

- (1) 7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수출입식품의 상표 심사증서》 또는 《수출입식품의 상표 심사 불합격 통지서》를 담당기구에 하달한다. 담당기구는 3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상술한 통지서 또는 증서를 발급한다. 또한 신청인이 증서 또는 불합격 통지서를 수령할 때 《수출입식품의 상표 증서 또는 통지서 수령증》¹²⁾ (별첨 5 참고)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 (2) 《수출입식품의 상표 심사 불합격 통지서》를 하달하면 해당 심사과정은 종료된다. 재차 신청을 제출한 경우 신규 신청으로 간주하여 신청 자료를 새로 제출하고 상응하는 심사비용을 납부하며 신청서 일련번호 역시 새로 부여한다. 또한 상부 보고 시 원래 《수출입식품의 상표 심사 불합격 통지서》를 신청 자료에 첨부하되 그 순서는 은행 지로 용지 다음에 둔다.

IV. 공 시

- (1) 담당기구는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장소에 식품 상표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자료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하여야 한다.
- (2) 심사 결과는 질검총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한다.

별첨1 : 《수출입식품의 상표 심사신청을 위한 보충 수정자료 고지서》

별첨2 : 《수출입식품의 상표 수리 결정서》

별첨3 : 《식품상표 심사 및 검사샘플 송부 통지서》

별첨4 : 《수출입식품의 상표 수리불가 결정서》

별첨5 : 《수출입식품의 상표 증서 또는 통지서 수령증》

별첨6 : 수출입식품 상표 심사 공시자료

※ 자세한 별첨자료는 주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進出口食品標簽單證領取收據